

성남아트센터 후원회 운영규정

제 정 2020. 05. 20

개 정 2022. 11. 21

개 정 2024. 12. 2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이 성남아트센터 후원회(이하 '후원회'라 한다)를 운영함에 있어 재단과의 관계를 명시하고 조성된 후원금을 관리 및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후원회'의 기본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후원회'란 문화예술을 아끼고 발전시키고자 하는 이들의 모임으로서, 재단의 공연·전시·문화 진흥 사업 및 문화예술 활동을 재정적, 정서적으로 지원하고 후원하고자 '재단'에 후원금을 납부한 이들의 모임을 말한다.
2. '사무국'은 '후원회'를 운영하는 담당부서를 말한다.
3. '후원회' 의사 결정 기구인 '운영위원회, 이사회'는 사무국에서 관리 한다.

제4조(구성) <개정 2022.11.21.>

- ① '후원회'의 운영을 위해 '재단' 내 사무국을 둔다.
- ② '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1인
 2. 부회장 5인 이내
 3. 이 사 회장, 부회장을 포함하여 30인 이내
 4. 감 사 2인
- ③ 제4조 2항 외 고문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 ④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한다.
- ⑤ '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의사 결정 기구로 '운영위원회, 이사회'를 둔다.
 1. 운영위원회는 임원(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 고문 및 자문위원으로 구성되며, 이사회 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2.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되며 회장이 의장이 된다.
- ⑥ 결정된 의사는 '총회'에서 의결한다.
 1. 총회는 '후원회'의 회원으로 구성되며 회장이 의장이 된다. 단, 회원이 법인 (단체 포함)일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참석하며, 대표자가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참석할 수 있다.

2. 정기총회는 매년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총회는 필요 시 한다.
3. 총회는 재적회원의 3분의 1 이상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5조(사업) ‘후원회’는 ‘재단’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재단’의 공연전시 및 문화진흥사업에 대한 지원
2. ‘재단’의 중장기 발전계획 추진을 위한 기금 조성
3. ‘재단’ 임·직원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지원
4. 재단에서 주최·주관하는 지역문화예술발전을 위한 소정의 후원사업 지원
5. 기타 ‘후원회’의 운영 등 목적 수행에 필요한 관련사업

제6조(후원사업) ‘후원회’는 제5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재단’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7조(회원의 구분 및 자격) ‘후원회’ 회원은 제5조를 적극 지지하고 동참할 뜻이 있는 개인회원 또는 법인(단체포함)으로 “별표 1”에 정한 구분에 따른 후원금을 납부한 자에게 자격이 주어진다. 단, 재단에 추가 후원금을 납부하면 승급 및 회원 자격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12.26.>

제7조2(회원의 자격상실) 회원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할 시 자격을 상실한다.

- ① 회원은 탈퇴 및 제명에 의하여 그 자격을 상실하고, 그 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탈퇴는 회원이 사무국에 탈퇴서를 전달하고 후원회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그 자격을 상실한다.
 2. 제명은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또는 본회의 명예를 실추시켰을때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행한다.
- ② 개인회원이 사망한 경우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 ③ 법인회원이 파산 또는 폐업 한 경우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단, 기업 인수, 사명 변경 등 기존 법인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④ ‘이매’, ‘까치’ 회원의 경우 각각 가입일로부터 5년, 2년이 경과 하면 그 자격을 상실한다. <신설 2024.12.26.>

제8조(회원예에 대한 예우) 회원에 대한 예우는 “별표 2”와 같다.

제9조(후원금의 운용과 관리)

1. 납부 된 후원금은 ‘재단’이 수입 처리하여 관리한다.



2. 후원금에 대한 기부금영수증은 ‘재단’이 발행한다.
3. 후원금 집행은 ‘재단’이 하며, ‘후원회’의 운영위원회와 협의 후 총회에 의결을 거쳐 제5조에 명시된 사업에 사용한다.
4. 단, 기 적립된 후원금은 ‘후원회’와 협의를 통해 순차적으로 수입 처리하여 제5조에 명시된 사업에 사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24.12.26.>

회 원 구 분

회원구분	가입기준	회 비	기 간
은 하 수	법인 (단체포함)	1억원 이상	평 생 부 부
달 무 리		5천만원 이상	
무 지 개		3천만원 이상	
탄 천		개인	
철 쪽	개인	5백만원 이상	5년간
이 매		3백만원 이상(본인)	
까 치		1백만원 이상(본인)	2년간
※ 5백만원 이상은 부부회원			



[별표 2] <개정 2024.12.26.>

회원구분에 따른 예우

명 칭	가입기준	평생회비	예 우	비 고
은 하 수	법인 · 개인	1억원 이상	- 기획공연 입장권 연간 20매 - 법인 : 월간 <아트뷰> 광고 무상 게재 (4회 / 가입 후 5년 내 사용, 미 사용시 소멸) - 무료 주차 차량등록	철쭉회원 이상은 평생회원 & 부부회원
달 무 리		5천만원 이상	- 기획공연 입장권 연간 14매 - 법인 : 월간 <아트뷰> 광고 무상 게재 (3회 / 가입 후 3년 내 사용, 미 사용시 소멸) - 무료 주차 차량등록	
무 지 개		3천만원 이상	- 기획공연 입장권 연간 10매 - 법인 : 월간 <아트뷰> 광고 무상 게재 (2회 / 가입 후 2년 내 사용, 미 사용시 소멸) - 무료 주차 차량등록	
탄 천		1천만원 이상	- 기획공연 입장권 연간 6매 - 법인 : 월간 <아트뷰> 광고 무상 게재 (1회 / 가입 후 1년 내 사용, 미 사용시 소멸) - 무료 주차 차량등록	
철 쭉	개인	5백만원 이상	- 기획공연 입장권 연간 4매 - 무료 주차 차량등록	
이 매	개인	3백만원 이상	- 기획공연 입장권 연간 2매 - 무료 주차 차량등록	5년간
까 치	개인	1백만원 이상	- 기획공연 입장권 연간 2매 - 무료 주차 차량등록	2년간
<기본예우> -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에 후원회원 명단이 새겨진 명판 영구보존 - 후원회원 명단을 전문 문화예술정보지 격월간 <아트뷰>와 성남아트센터 홈페이지, 기획공연 . 전시 팸플릿에 상시 수록 - 공연 프로그램 및 전시도록, 간행물 증정(자체기획에 한함) - 멤버십 카드 발급(멤버십 카드 소지 시 각종 할인 및 혜택 제공) * 기획공연 예매 시 최대 할인을 제공, 기획전시 무료 입장(동반 1인 포함) * 아카데미 수강료 10% 할인 - 후원회 단독 행사 초청				

